

학 원 원 칙

제1조(목적) 이 학원은 종합(보습, 실용외국어)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학원은 와이비엠레몬 원격학원 이라 한다.

제3조(위치) 이 학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6층(관훈동, 백상빌딩)에 둔다.

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.(www.ybmlimon.com)

제4조(정원) 이 학원의 교습과정별 정원은 붙임과 같다.

제5조(교습과정) 이 학원의 교습과정은 붙임과 같다.

제6조(수료)

- ① 이 학원의 수료 인정은 출석일수,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.
-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제7조(휴강일)

- ①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.
 1. 국경일 및 공휴일
 2. 정기 휴일
 3. 개원기념일
- ②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변과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강을 할 수 있다.
- ③ 휴강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.

제8조(교습비등)

- ① 이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징수한다.
- ② 이미 납입된 교습비 등 중 수강하지 않은 월의 교습비 등은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「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와 같은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.
 1.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
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습비등의 납입이 곤란한 자
3. 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
4. 당해 교습과목에 재능이 탁월한 자 등

제9조(시행세칙)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원칙은 2024년 06월 01일 부터 시행한다.

별첨1) 교육과정 편성표(교습비 등 내역서) 별도 제출